제4회 전공대표협의회 회의록

- ୬♣ 최초 작성자 이 이동건
- 최종 편집자 이 이동건
- 十 속성 추가
- 이 댓글 추가



총학생회장 전공대표 22명 중 16명 참석, 총학임원 4명 중 4명 참석하였으므로 제4회 전공 대표협의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 안건

1.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칙 개정 보고

- **총학생회장** 첫 번째 보고 안건으로 <u>교육대학원 총학생회칙</u> 개정과 관련되어 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중학생회장 현재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칙은 2021년 9월을 끝으로 2년 2개월동안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금번 전공대표협의회에서는 개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공유하고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간단한 보고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고 12/19(화)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제5회 전공대표협의 회때 최종 회칙 개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 선거세칙>

2023. 11. 29. (수)

현행	개정(안)	비고	
제29조 (당선 및 당선공고)	제29조 (당선 및 당선공고)	91	
① - ② (생략) ③ 총막성회 회칙에 따라 최다득표자가 회장 당선자이다.	 ① - ② (연행과 같음) ③ 천체유권자의 25%이상이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 된다. 단, 단독후보인 경우 전체유권자의 25%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의 천정을 얻어야 당선된다. 	투표율 저조로 인하여 해당 조항 개정 필요	

신·구조문 대비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칙>

2023. 11. 29. (수)

현행	개정(안)	비고
제16조 (업무 및 권한)	제16조 (업무 및 권한)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ANAMAN DIAL TITA TITA
④ 집행부 각 부장의 인준권.	④ (삭제)	현행에 맞춰 개정 필요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제24조 (임명)	제24조 (임명)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과 함께 출마할 수 있으며, 학생	②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과 함께 출마할 수 있으며, 학생		
회장 단독 출마의 경우 총학생회장의 추천과 정기대의	회장 단독 출마의 경우 총학생회장의 추천 및 정기대의		
원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원회 보고를 거쳐 임명된다.		
③ 각 부장은 지원서를 모집 기간 내에 제출해야하며, 정기	③ 각 부장은 지원서를 모집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총	현행에 맞춰 개정 필요	
대의원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단, 가부	학생회장의 선발 및 정기대의원회 보고를 거쳐 임명된		
동수의 경우 총학생회장이 결정한다.)	C).		
④ 집행부원은 각 부장의 추천서 혹은 지원서를 받아 총학	④ 집행부원은 필요시 각 부장의 추천서 혹은 지원서를 받		
생회장이 임명한다.	아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30조 (장학금)	제30조 (장학금)		
① 23조의 1, 2항에 의거한 자격을 상실한 집행부는 해당	① 제28조의 1, 2항에 의거한 자격을 상실한 집행부는 해		
학기 수혜 장학금의 전액을 학생회비로 환수한다.	당 학기 수혜 장학금의 전액을 학생회비로 환수한다.		
② 23조의 3, 4항에 의거하여 자격을 상실한 집행부원은	② 제28조의 3, 4항에 의거하여 자격을 상실한 집행부원	23조 → 제28조 오타 수정	
해당학기의 남은 임기의 비율을 계산하여 해당 장학금	은 해당 학기의 남은 임기의 비율을 계산하여 해당 장		
을 학생회비로 환수한다.	학금을 학생회비로 환수한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제32조 (업무 및 권한)	제32조 (업무 및 권한)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부장을 추천하여 교육대학원 대의원회의 인준을 거	③ 각 부장을 선발하고 정기대의원회 보고를 거쳐 임명한		
쳐 이를 임명한다.	C).	현행에 맞춰 개정 필요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학생회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	⑤ 학생회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		
여 동의를 거쳐 교육대학원 학생총회에 제출하여야 한	여 동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Ct.	⑥ (현행과 같음)		
⑥ (생략)	900 9000 000000		
	제33조 (지위 및 구성)		
제33조 (지위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기반수 → 과반수 오타 수정	
① (생략)	② 대의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대의원회원이 비대위원		
② 대의원의 가반수의 동의를 얻은 대의원회원이 비대위원	장이 되며 비대위의 의장이 된다.		
장이 되며 비대위의 의장이 된다.			
	제36조 (직무대리)	명칭을 '총학생회'로 통일	
제36조 (직무대리)	① 비대위는 설립일부터 총학생회의 모든 직무를 대리한다.		
① 비대위는 설립일부터 총학의 모든 직무를 대리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제39조 (회비) ① (생략) ② 회비는 입약한 학기에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 (회비) ① ~ ② (번행과 같음) ③ (조망 추가) 입익한 억기에 회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추후에 전공대표를 통해 남부할 수 있다.	
제41조 (준에산편성) ① 총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 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1조 (준예산판성) ① 예산만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연행과 같음)	연행에 맞게 조항 수정·추가
제42조 (심의 및 승인) ① 총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회기 내에 심의하고 승인받는 다. ② (생략)	제42조 (심의 및 중인) ① 예산인은 매 학기에 중학생회 회의를 통해 총무부에서 작성하고, 대의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받는다. ② (연행과 골음)	
제44조(공고) ① 학생회는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 및 결산내역을 7일 이 내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공고) ① 총막성회는 집행한 예산 및 괄산내역을 대의원회 회의 예서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제47조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회칙반영)	제47조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회칙반영)	
①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회칙을 반영하여 고려대 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활동을 알 수 있다. 단, 고려대 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가 연합회 회칙을 준수하지 않 고 특별한 활동이 없다고 흥악정회장이 판단 될 때에는	① ~ ③ (식제)	
탈퇴할 수 있다. ②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임원진은 교육대학원 총 학생회장(대의원), 부총학생회장(집행위원) 2만으로 활 등하며, 추가 선발이 가능할 시에는 교육대학원 총학생 회 임원진으로 추가 선발일 수 있다.		특수대학원 연합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항 삭제
③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회칙에 따라 연합회 회 비를 지출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 해당 대비표를 보고 문의하실 전공대표 선생님께서는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 안건

1. 11월 회계내역 심의

중학생회장 첫 번째 심의 안건으로 11월 회계내역 심의를 상정합니다.

- **총학생회장** 이상 제4회 전공대표협의회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 회의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폐회시간 2023년 11월 29일(수) 22:24
- △ 기록자 부회장 김원경

결정 사항

1. 11월 회계내역 심의

[2023-2] 11월 회계내역 심의

전휘민	가정교육	찬성	
이선홍	간호교육	불참	
박윤서	교육방법	찬성	
정유선	교육사철학	찬성	
이근희	교육정보	찬성	
양동규	교육행정 및 고등교육	찬성	
임소연	국어교육	찬성	
오준석	기업교육	찬성	
김윤정	도덕윤리교육	찬성	
김윤정	미술교육	불참	
김예린	상담심리교육	불참	
엄재이	생물교육	불참	
이유진	수학교육	찬성	
박교림	역사교육	찬성	
이태경	영어교육	불참	
박혜연	유아교육	찬성	
이준혁	일반사회교육	찬성	
이주현	일어교육	불참	
고 Aa 이름	## G = G == 전공	—————————————————————————————————————	+ •••
		산성	